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국무회의 통과 후 별도 공지 / 배포 2026. 9. 1. (화) 08:30

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(CCM)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 -
-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 현실화 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'공정위')는 '**소비자기본법 시행령**(이하 '시행령') **개정안**'이 오늘 **국무회의**를 **통과**하였다고 밝혔다.

개정 시행령은, 소비자중심경영(CCM, Consumer Centered Management) '인증' 제도의 명칭이 '사업자 지정' 제도로 변경되고 심사 신청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심사 업무 수행 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**「소비자기본법」**이 **지난 3월 개정**된 것에 따른 **후속 조치**와 더불어, **소비자정책위원회**의 **자문기구**인 **전문위원회**의 **운영 규정**을 **개선**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.

먼저, 소비자기본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**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* 관련 용어**를 **정비****하였으며, 사업자가 **심사가 이루어지기 전**에 심사업무 **수행 기관에 직접 비용을 납부**하도록 규정하였다.

* 기업이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

** ▲인증심사기관 → 지정심사기관, ▲인증서 → 지정서, ▲인증심사비용 → 사업자지정 심사비용 등

또한, **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* 위원 구성 규정**을 **현실 여건에 맞게 변경**하였다. 기존 시행령은 안건과 관계된 부처가 소속 **고위공무원**을 사전에 위원으로 **지명**하도록 정하였으나, 개정안은 필요시 담당 실무자가 참석하게 하는 등 **회의를 유연하게 운영**할 수 있도록 **해당 조항**을 **삭제**하였다. 아울러, 개정안은 **민간위원**을 **국무총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**하도록 하여 **신속한 위원 구성**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.

* 소비자 관련 정책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의체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,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미리 연구·검토하는 자문기구

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오는 **9월 11일**부터 **시행**될 예정이다.

<붙임>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신·구조문 대비표

담당 부서	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권순국 (044-200-4405)
		담당자	사무관	이채은 (044-200-440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**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신·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·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.	제7조(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) ---------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정비해야 ----.
제11조의2(소비자중심경영인증)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목표, 경영방식 및 성과관리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②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조직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	제11조의2(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) ① ----------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(이하 "사업자지정"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자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사업자지정기준---------. ②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자---------- ---------- 사업자지정 신청서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제출해야 ----. ③ ----------

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.	---------- 사업자지정기준----------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----------.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 사업자지정---------- 사업자지정---------.
제11조의3(인증표시의 사용) 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·용기, 홍보물, 문서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.	제11조의3(사업자지정표시의 사용) ① 사업자지정---------- 사업자지정---------.
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 사업자지정---------- 표시해야 ------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인증의 도안, 규격 등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	③ ---------- 사업자지정----------.
제11조의4(포상 또는 지원 등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하	제11조의4(포상 또는 지원 등) ① ----------

는 경우 인증의 등급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------ 사업자지정---------- 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의5(인증심사비용)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은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. 다만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,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	제11조의5(사업자지정 심사비용) ① ---------- 사업자지정 심사비용(이하 “사업자지정 심사비용”이라 한다)은 사업자지정----. ----------. ②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의 금액----------.
제11조의6(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(이하 “인증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1.·2. (생 략)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 <신 설>	제11조의6(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지정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(이하 “지정심사기관”이라 한다)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지정심사기관---------- --------. ③ 사업자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0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을 사업자지정의 심사 전에 지정심사기관에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납부해야 한다.
제11조의7(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) ① (생 략)	④ ---------- 지정심사기관에 대하여 사업자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----------.
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	제11조의7(사업자지정의 취소) ① (현행과 같음)
1.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: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	② ----------대통령령으로 ----------.
2.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: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	1. ----------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자: 그 사업자지정---------
	2. ----------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자: 그 사업자지정---------
제18조(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) ① (생 략)	제18조(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에 따른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,	③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----------.
1.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	<삭 제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	3. ----------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----------
<신 설>	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제20조(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) ①시·도지사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	제20조(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) ①----------통합특별시·광역시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4조(처리기간의 연장) 법 제58조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	제44조(처리기간의 연장) 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

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.	하는 사건"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46조(분쟁조정절차의 분리·병합)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.	제46조(분쟁조정절차의 분리·병합) ①---------- 법 제58조제1항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3조(자료 등의 제출 요청)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이나 분쟁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	제53조(자료 등의 제출 요청) ---------- 법 제58조제1항 ----------.
제54조(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) 조정위원장은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	제54조(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) ---------- 법 제58조제1항 ----------.